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재가이용 급여비용의 범위

혜택구분	공단/개인부담비율		합계
	부담비율 구분	월 부담비율	
일반대상자	공단부담금	85%	100%
	개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	공단부담금	94%, 91%	100%
	개인부담금	6%, 9%	
기초생활수급자	공단부담금	100%	100%
	개인부담금	0%	

*혜택 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됩니다.

2023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 한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0	1,211,10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단, 평일 심야(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 및 일요일 30% 가산,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